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490

발의연월일: 2024. 8. 1.

발 의 자:김도읍・박성훈・신동욱

백종헌 • 인요한 • 장동혁

김정재 • 구자근 • 조지연

권영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퇴직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한 현행법의 해당 조문에서는 제한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을 예시하고 있으나,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는 명시되지 않아 향후 법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제한과 관련하여 예시된 국가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법률 제 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금융위원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금융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수임제한) ①・② (생	제31조(수임제한) ①・② (현행과
략)	같음)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	③
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	
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	
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	
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공	
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	
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금융위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원회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	
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	
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	
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	
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	
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	
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	
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